

2025

산림경영지도원 산림조합법

эм북 자격증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★ 1시간 30분 완성, 고득점 가능
- ★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
도서명 : 산림조합법

ISBN : 979-11-7393-011-9

발간일 : 2025-04-14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8,500원



산림조합법

[목차]

제1장 총칙(p4)

제2장 조합(p13)

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(p109)

제3장 중앙회(p114)

제4장 감독 등(p157)

제5장 벌칙 등(p165~172)

[약어]

후보는 후보자

국가등은 국가, 지자체

총회등은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11조

1. 목적

- 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통해

-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촉진, 산림생산력 증진
- 구성원의 경제/사회/문화적 지위향상
-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이바지

2. 정의

가. 조합은 법에 따라 설립

- 지역조합은 지역산림조합
- 전문조합은 품목별/업종별 산림조합

나. 중앙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

산림조합중앙회

다. 산림소유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림
소유

라. 임업

- 1) 임업진흥법상 임업
 - 2) 산림용 종자/묘목, 균류 생산업
- 균류는 버섯종균 포함

마.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

- 3헥타르이상 산림에서 임업 경영
- 연 90일이상 임업
- 임산물 연간 판매 120만원 이상
-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
- 3백 제곱미터 이상 포지에서 조경수,

분재소재 생산, 산채 등 산림부산물 재배

- 대추/호두 1천, 밤 5천, 잣 1만 제곱미터
이상 재배

-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 재배

바. 기타

- 기부행위는 금전/물품, 재산상 이익 제공,
제공 의사표시/약속

3. 명칭

가)

- 지역조합은 지역명 붙인 산림조합 명칭,

- 전문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이나 업종명

불인 산림조합 명칭,

- 중앙회는 산림조합중앙회 명칭 사용

나)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아니면
산림조합, 산림조합중앙회, 유사 명칭 사용못함

- 단, 조합/중앙회 출자/출연 법인이나 중앙회
인정 법인이 조합/중앙회 정관에 따라 승인
받은 경우 사용 가능

4. 법인격 등

-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
법인으로 함

- 조합/중앙회 주소는 주된 사무소(이하
주사무소) 소재지

- 5. 최대봉사의 원칙:** 조합/중앙회는,
- 조합원/회원에게 최대 봉사
 - 일부 조합원/회원 이익에 편중되거나
영리/투기 목적 업무 못함

- 6. 중앙회의 책무**
- 회원의 건전한 발전 도모 적극 노력
 -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해
회원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것 금지

- 7. 공직선거 관여 금지**
- 조합등(조합과 조합공동사업법인)과
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,

특정인이 당선되거나 되지 않게 하는 행위
못함

- 누구든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해 상기
행위 못함

8. 부과금의 면제

-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은 국가등의
조세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 면제
- 예외)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법상 사업
외의 목적으로 사용시

9.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

가. 국가/공공단체

-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 침해못함
-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 협력(경비 보조/융자 가능)

나. 중앙회 회장(이하 회장)

- 조합등과 중앙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국가/공공단체에 의견 제출
- 국가/공공단체는 의견 반영 최대한 노력

10. **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**

-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 협동조합과 상호협력, 이해증진, 공동사업개발 노력

11. 다른 법률과의 관계

가) 조합등과 중앙회 사업에 다음 적용안함

- 보험업법

- 여객자동차법(면허, 운임/요금 신고, 유상운송 금지)

- 화물자동차법(유상운송 금지)

- 공인중개사법(중개사무소 개설등록)

나)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에

화물자동차법(유상운송 금지) 적용안함

다) 지역조합과 중앙회

- 조경사업과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 건축사업은 건설업으로 한정
- 건설산업기본법상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게 함
- 요건 갖추어 시도지사에 신고시 건설업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봄

라) 조합등과 중앙회 보관사업은 상법 준용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조합

제1절 설립

12~17조

1. 목적

- 조합원에 기술/자금/정보 제공
-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촉진, 산림의 생산력 증진
-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판로 확대, 유통원활화
- 조합원의 경제/사회/문화적 지위향상

2. 구역과 사무소

가. 구역

1) 지역조합

-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(이하
시군구)

- 단, 시군구 조직이 부적당하면 청장
승인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

2) 전문조합

- 경제권역이나 주 생산단지 중심으로
정관으로 정함

3) 같은 구역에 지역조합 둘 이상, 전문조합
둘 이상 각각 설립못함

나. 사무소

- 조합은 구역에 주사무소 두며, 정관
기준/절차에 따라 지사무소 둘 수 있다